

제 호			
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			
기관명			
주소			
대표자			
전화번호		전자우편주소	
전문인력양성 분야			
지정기간			
「해양경찰장비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해양경찰장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. 년 월 일 해양경찰청장 직인			